

다전공운영규정

(규정명 개정 2023.04.04.)

2018.12.27.제정	2019.05.29.일부개정	2020.09.01.일부개정	2021.03.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1.09.01.일부개정	2022.04.27.일부개정	2023.04.01.일부개정
2024.03.01.일부개정	2025.12.10.일부개정	2026.06.18.일부개정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명대학교 「학칙」 제35조에 따른 다전공의 운영과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다전공”이라 함은 복수전공, 부전공, 융복합교육과정(연계전공, 융합전공, 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나노디그리과정, **매크로디그리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10., **2026.6.18.**)

② “복수전공”이라 함은 소속 학과 또는 학부 주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10.)

③ “부전공”이라 함은 소속 학과 또는 학부 주전공 이외의 학과(전공) 또는 학부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10.)

④ “융복합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생의 전공 선택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나노디그리과정, **매크로디그리과정**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 2021.9.1., 2023.4.4., 2024.3.1., 2025.12.10., **2026.6.18.**)

1. “연계전공”이라 함은 미래교육 강화와 다양한 학업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학과, 2개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각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 연계하여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융합전공”이라 함은 창의융복합 시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가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소속학과의 전공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융합전공에 편성된 교육과정을 주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복합전공”이라 함은 학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또는 배정된 전공 이외에 동일학부 내 타전공을 함께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설계전공”이라 함은 소속 학과 또는 학부 주전공 이외의 학제적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승인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5.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또는 “나노디그리과정”이라 함은 특화형 교육과정으로 최신의 산업수요나 미래인재양성, 전공심화, 역량강화,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소단위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6. **“매크로디그리과정”이라 함은 교양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제외한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융합역량 심화교육과정으로, 이수한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수 및 합산 이수학점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에 준하는 성과를 인정받는 과정을 말한다.**

⑤ 삭제 <2023.4.4.>

⑥ 삭제 <2023.4.4.>

⑦ 삭제 <2023.4.4.>

[제4항 제6호 신설 2026.6.18.]

제3조(적용범위 및 이수제한) ① 다전공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

1. 「학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본 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학과(부)의 전공
2. 제7조에 따라 개설된 융복합교육과정
3. 국내·외 타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별표 5의 전공

② 제1항의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미래융합대학 소속학과의 전공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1., 2023.4.4., 2024.3.1., 2025.12.10.)

1.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이 미래융합대학에 편성된 타 학과의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2.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 이후 유아교육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교원양성과정 이수 신청 불가능)

③ 제1항의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건학과의 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항 신설 2026.6.18.]

제4조(신청자격) ① 다전공의 신청자격은 입학·편입학 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1., 2021.3.1., 2023.04.04., 2024.3.1.)

② 연계전공의 경우 제1항에 이외에는 따로 신청자격을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연계전공에 대하여 신청 가능 학과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

③ 융합전공의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표 4]의 융합전공의 주관학과(부) 또는 참여학과(부)에 소속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1.)

④ 복합전공의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학부로 편성된 전공(학과) 소속 학생에 한하여 소속 학부 내에 편성된 타전공(학과)의 전공을 복합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1.)

⑤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전공의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그 신청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

제5조(이수요건) 다전공 이수요건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학과 5년제 학생의 주전공 이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5.29., 2020.9.1., 2022.4.27., 2023.04.04., 2024.3.1., 2026.6.18.)

제6조(이수 허용인원) ① 다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학과(부) 및 전공의 특성과 수용능력 등을 감

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보건학과의 복수전공 이수 허용인원은 학과(부)장이 매 학기 신청 공고 전까지 정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절차를 실시한다.

[제6조 제2항 신설에 따른 당초 제6조를 제6조 제1항으로 변경 2026.6.18.]

제7조(교육과정 개설) ①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나노디그리과정 및 협약에 따른 다전공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을 승인한다. (개정 2023.04.04., 2024.3.1.)

② 삭제 <2024.3.1.>

③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신청한 학생의 해당 학과(부)장은 전공분야 교수 2인과 학생의 지도교수로 구성된 자기설계전공심사위원회에서 전공의 타당성, 교육과정 등을 심사·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무처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기설계전공을 허가한다. 다만, 기 승인된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있는 경우의 해당 자기설계전공은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개정 2021.6.1., 2023.04.04.)

④ 삭제 <2024.3.1.>

⑤ 삭제 <2024.3.1.>

제7조의2(교육과정의 편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하는 융합전공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하는 협약에 따른 다전공은 [별표 5]와 같다.

[조 신설 2024.3.1.]

제8조(신청 및 허가) ① 다전공 이수 희망자는 매학기 지정기간에 다전공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삭제 <2021.9.1.>

③ 삭제 <2021.9.1.>

④ 교무처는 매학기 수강신청 전에 다전공 신청자의 다전공이수를 허가한다. (개정 2021.9.1.)

⑤ 삭제 <2021.9.1.>

⑥ 입학 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제6항 신설 2024.3.1.]

제9조(이수 및 포기) ① 다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은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2024.3.1.)

1.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주전공 학과(전공)과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정한 졸업종합시험(논문 등)을 각각 통과
2.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융합전공에서 정한 졸업종합시험(논문 등)을 통과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주전공 학과(전공)의 졸업종합시험(논문 등)을 통과

②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전까지 매학기 지정기간에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2021.6.1., 2021.9.1.)

③ 다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다전공 신청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학점 중 소속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공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소속학과(전공) 전공과목 이외의 이수과목은 자유선택 영역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04.04.)

④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이 21학점 이상이면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매크로디그리과정 신청 및 인정) ① 매크로디그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지정기간에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및학사운영규정」 제6조2제5항제7호에 따른 수강신청 초과학점 혜택을 부여한다.

② 교양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제외한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크로디그리(융합부전공)으로 인정하고, 3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 이수학점이 36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크로디그리(융합복수전공)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크로디그리과정의 전공명은 "매크로디그리과정"으로 하며, 학적부 및 학위증서에 이수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매크로디그리과정(융합부전공) 인정의 경우: 매크로디그리과정 이수(융합부전공)

2. 매크로디그리과정(융합복수전공) 인정의 경우: 매크로디그리과정 이수(융합복수전공)

④ 여러 마이크로디그리를 조합하여 자기설계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7조제3항의 자기설계전공 절차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6.6.18.]

제10조(교과목 중복인정) 소속 전공학과(부)와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학과(부)의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복합전공의 중복 인정 학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3.1., 2021.9.1., 2025.12.10.)

제11조(다전공의 지도 및 운영) ①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학과(부)를 지정하여야 하고 전공별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에 대한 학사 및 수강지도는 주관학과(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 2024.3.1.)

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대한 학사 및 수강 지도는 학생 소속학과(부, 전공) 및 학생이 이수하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과(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③ 복합전공과 자기설계전공 이수에 대한 학사 안내 및 수강지도는 학생 소속학과(부, 전공)의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개정 2023.04.04.)

④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및 나노디그리과정의 이수에 대한 학사 안내 및 수강지도는 해당 과정을 개설한 대학/학과(부, 전공)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4.)(개정 2024.3.1., 2025.12.10.)

제12조(학위 등) ① 다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적부 및 학위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복수 전공은 각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학위의 종별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학위증에 이수한 전공을 모두 표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명은 「학칙」 제43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3.1.)

③ 매크로디그리(융합부전공) 또는 매크로디그리(융합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적부 및 학위증서에 그 이수 사실을 표기하되, 해당 과정에 대한 학위는 별도로 수여하지 아니하고 성적 증명서에 구성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명칭을 병기한다.

[제3항 신설 2026.6.18.]

제13조(다전공 파트너 이수제) ① 다전공 파트너 이수제(이하 ‘파트너 이수제’라 한다)란 학제 간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한 개 이상의 학과를 서로 또는 일방이 다전공 파트너 학과로 정하여 해당학과의 소속 학생이 다전공 파트너 학과의 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다.(개정 2025.12.10.)

② 파트너 이수제 신청은 학사관리팀으로 하며, 파트너 학과의 지정 및 파트너 학과에 대한 다전공 이수지도 등 학생지도는 해당 학과에서 한다. (개정 2021.6.1.)

③ 파트너 이수제는 다전공 이수관련 제규정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파트너 이수제 시행학과에 대하여 파트너 이수제와 관련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9.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복수전공이수규정」, 「부전공이수규정」, 「연계전공이수규정」, 「융합전공이수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하여 이미 다전공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신청 예정인 학생의 이수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신설되는 복합전공의 이수요건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설된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제2조의 4호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운영되는 융합전공은 제1융합전공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8조제6항의 마이크로디그리 필수 신청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수한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은 제9조의2에 따른 매크로디그리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산입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24.3.1., 2026.6.18.)

다전공 이수 기준학점 (제5조 관련)

다전공 구분	2019학년도 이후 입학		2018학년도 이전 입학		
	주전공 이수학점	다전공 이수학점	학과 졸업학점	주전공 이수학점	다전공 이수학점
복수전공	36	36	135~140 학과(전공)	45	39
			130 학과(전공)	42	33
부전공	51	21	135~140 학과(전공)	45	21
			130 학과(전공)	42	21
연계전공	51	21	135~140 학과(전공)	45	21
			130 학과(전공)	42	21
융합전공	-	별표 3의 전공별 이수학점	전체학과(전공)	-	별표 3의 전공별 이수학점
복합전공	복학전공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주전공 졸업학점 이수	21	전체학과(전공)	복학전공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주전공 졸업학점 이수	21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학과 · 전공별 졸업학점	과정별 9 ~ 15	전체학과(전공)	학과 · 전공별 졸업학점	과정별 9 ~ 15
나노디그리과정	학과 · 전공별 졸업학점	과정별 6 ~ 8	전체학과(전공)	학과 · 전공별 졸업학점	과정별 6 ~ 8

- 매크로디그리(융합 부전공) 매크로디그리(융합 복수전공)은 각각 부전공, 복수전공의 다전공 이수기준학점을 따른다.

[별표 2] (신설 2024.3.1.)

건축학과 5년제 주전공 이수 기준학점 (제5조 관련)

구분	2019 이후 학번	2015~2018 학번	2014 이전 학번
전체 다전공 (건축BIM-SW연계전공 제외)	130	130	119
건축BIM-SW연계전공	109	109	98

[별표 3] (신설 2024.3.1.)

연계전공 편성표 (제7조의2제1항 관련)

연계전공명	주관학과(부)	참여학과(부)	계열	개설년도
건축BIM-SW연계전공	건축공학과	건축학과(4년, 5년) 실내건축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부	공학	2015
글로벌SW창업연계전공	컴퓨터공학과	게임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AI학부 ※정보보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인문사회	2019
지능기계(AI)SW연계전공	※기계·로봇공학과	※기계·로봇공학부 ※AI자동화설계공학과 게임공학과	공학	2019
관광컨벤션(MICE)SW연계전공	글로벌관광학과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학부 ※정보보호학과	인문사회	2019
빅데이터SW연계전공	경영학과	국제통상물류학과 ※유통물류학과 ※유통물류학부 컴퓨터공학과	인문사회	2019
성인창업연계전공		미래융합대학 전학과	인문사회	2021
메타버스SW연계전공	시각디자인학과	게임공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실내건축학과	공학	2022
ESG창업연계전공	-	실내건축학과 미래자동차학과 전기제어학부,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해양모빌리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공학	2023
푸드창업경영연계전공	경영학과	글로벌관광학과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학부	예체능	2023

[별표 4] (신설 2024.3.1.)

융합전공 편성표 (제7조의2제2항 관련)

융합전공명	주관학과	참여학과	계열	전공이수학점 (전공필수)	개설년도
글로벌비즈니스 융합전공	국제통상물류학과	※유통물류학과 ※유통물류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글로벌관광학과,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학부	인문사회	75	2019
메카트로닉스공학 융합전공	※기계·로봇공학과	※AI자동화설계공학과 ※의료기기학과 ※전자및의용공학부	공학	81(12)	2019
융합공학전공	미래자동차학과	※자동차공학과 ※AI자동화설계공학과 ※기계·로봇공학과 ※기계·로봇공학부 냉동공조공학과 전기제어학부 ※전기공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전자및의용공학부 ※해양모빌리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공학	81	2022
IISC융합전공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학과 ※AI학부, 게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공학	81(6)	2023

[별표 5] (개정 2024.3.1., 2025.12.10.)

다전공 협약과정 편성표 (제7조의2제3항 관련)

협약기관	전공명	참여학과	다전공 이수유형	개설년도
부산지역 공유대학	미래모빌리티전공	전기제어학부(전기에너지전공, 자율운항시스템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 마이크로디그리	2026
	해양미래산업전공	국제통상물류학과		2026
	클린에너지전공	미래자동차학과, 전기제어학부(전기에너지전공, 자율운항시스템전공)		2024

* 기존 전공은 폐지되며, 해당 전공은 신설 전공으로 대체 운영됨

- 1) 스마트항만물류전공, 스마트국제물류전공 → 해양미래산업전공
- 2) 스마트해양모빌리티전공 → 미래모빌리티전공